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경 과

- 청 원 자 : 김기창(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외 19명
- 소개의원 : 김현기의원(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 최호정의원(국민의힘, 서초 제4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 접수일자 : 2023. 2. 1.
- 회부일자 : 2023. 2. 2.

2. 청원요지

- 포이사거리에 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해줄 것을 청원
 - 포이사거리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강남구 개포4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2020년도에 서초구가 발표한 「첨단 R&D 육성 양재택비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포이사거리에 역사가 설치되어야 함
 - 포이사거리에 역사가 설치되면 서울시가 2015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양재천을 지하철 역에서 내려 바로 걸

을 수 있고, 양재천을 사랑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임.
설치되는 역사 이름으로는, 이제는 없어진 “포이동” 이름을 따르기보다 “양재천역”으로 하는 것이 더욱 지역적 상징성을 갖출 것임

3. 소개의원 요지

- 서초구가 추진하는 양재택지지구 단위계획 및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포이사거리에 국가에서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의 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해줄 것을 청원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원안가결(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위례과천선은 국가시행 사업으로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민자적격성 조사 중('22.9~)으로 현재는 정거장 위치가 미확정 상태임
 - 정거장 위치는 향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및 제3자공고를 거쳐 다양한 민자계획(안)을 국토부에서 평가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확정 예정
 - 정거장 신설 건(정거장명 포함)은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1) 교통정책과-3328 (2023.02.27.)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이자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포함된 포이사거리 에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신규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 삶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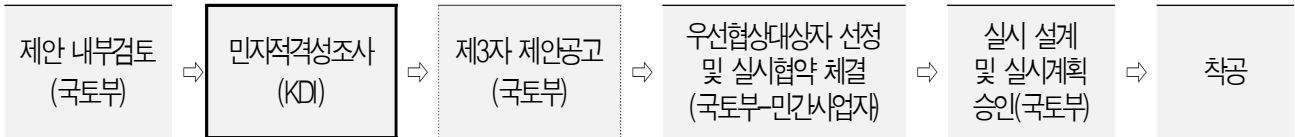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및 계획

- 위례과천선(북정~정부과천청사, 총 연장 22.9km)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고시된 바 있음
- 위례과천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통해 '22년 9월부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중이며 '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를 통

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참고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참고2: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 노 선 명: 위례과천선(광역철도)
 - 구 간: 북정~정부과천청사
 - 사업내용: 연장 22.9km(복선전철)
 - 사 업 비: 1조 6,990억원
 - 사업목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제고
 - 추진경위
 - '16.06.27.: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17.02.28.~03.1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추가건의)(사→국토부)
 - '19.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사→국토부)
 - '20.05.: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위례과천선 포함(국토부)
 - 위례과천선 종점 연장(경마공원→정부과천청사), 광역교통개선대책비 4,000억원 반영
 - '21.0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사업구간: 북정~정부과천청사(22.9km), 총 사업비: 1조 6,990억원
 - '21. 말: 위례과천선 민자제안(대우건설 →국토부)
 - '22.09.: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국토부 → KDI)
- ※ 민자제안노선의 정거장, 경유지 등은 대외비로 비공개상황

2)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국토교통부('23.1.3.) P.15

-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단축: (수도권 광역) 대곡소사선·별내선 개통, 대장홍대선 및 위례과천선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울 5호선 연장 등 사업화 추진

■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 관련

- 위례과천선은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선으로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중인 광역철도사업임
- 동 청원의 요지대로 강남구 개포동·서초구 양재동 경계에 위치한 포이사거리는 서울시 「양재 AI 혁신지구(舊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City조성계획)」³⁾ 및 서초구 「첨단 R&D육성 양재택지계획 재정비안」⁴⁾에서 발표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포이사거리가 인접해 있는 강남구 개포4동 주변 500m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철도 사각지대임을 고려할 때 위례과천선 내 포이사거리 역사 신설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위례과천선은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이고 향후 민자적격성 통과 및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위례과천선과 관련하여 현재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역사 신

3) 바이오AI산업과-양재AI 혁신지구 개발 육성('21.12.21.)

4) 서울 서초구, 첨단 R&D육성 '양재택지계획재정비안' 공고('20.10.21.)

설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⁵⁾에서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km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신설시 이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수요증가 및 철도 사각지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제2항에서 광역철도의 경우 역명 제정⁶⁾시 관할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 서울시의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포이동⁷⁾”이 '08년 개포동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양재천역”을 역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6)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 노선 및 역명 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과 관련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역명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역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포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던 동으로 2008년 1월1일에 개포동과 통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